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10.4.~11.30.)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4.~11.30.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광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 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 국조실 주관, 고용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참여 → 채용강요·기계사용 강요·업무방해 등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대응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 상반기 점검결과: 200개소 점검, 62개소에 대해 과태료 7, 시정명령 3, 개선권고 77

이정환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432)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강순형 (044-202-7443) 서동윤 (044-202-7493)

붙임

워크넷 구인 사업장 점검 대상 및 법률 주요 내용

□ 점검 규모

- 워크넷을 통해 채용 공고한 사업장 약 200개소

□ 점검 대상

- ① 워크넷 채용공고의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신고센터 접수 사업장
- ② 점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채용절차법 위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구인 사업장
- ③ 기타 워크넷 공고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거짓채용광고 금지	■ 채용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광고내용·근로조건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강요 등 금지	■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 ①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모든 금전적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등	■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한 미반환 ■ 반환 청구기간 도과 경우 및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 채용서류 반환 소요 비용 구인자 미부담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반환 청구에 대비한 채용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 서류 반환, 폐기 등의 규정 고지 미이행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권장	■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전자방식 서류접수	■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채용일정 및 과정·채용여부 고지	■ 채용일정·심사지연사실·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 여부 고지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